

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

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(제8조제1항 관련)

1. 종합주류도매업

자본금 (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)	5천만원 이상
창고면적	66㎡ 이상
그 밖의 사항	<p>가.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</p> <p>나. 면허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격 요건</p> <p>1) 미성년자가 아닐 것. 다만,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 <p>2)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</p> <p>3) 「조세범 처벌법」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</p> <p>4)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,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</p>

비고: 면허 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.

-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,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
- 그 밖의 사항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

3. 그 밖의 사항란 나목2)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

2. 특정주류도매업

창고면적	22m ² 이상
판매시설	저장용기 및 방충설비(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그 밖의 사항	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: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1), 3) 및 4)

3. 주정(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)도매업

가. 주정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

나. 시설기준

구분	시설구분	시설기준
1)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·기구	가) 가스크로마토그래피	1대
	나) 화학천칭	감도 0.1mg 1대
	다) 현미경	1,000배 이상 1대
	라) 항온항습기	0 ~ 65℃ 1대
	마) 건조기	110℃ 1대
	바) P.H메타	감도 0.1 1대
	사) 고압살균기	20파운드 이상 1대
	아) 증류수채취기	시간당 2ℓ 이상 1대
	자) 무균상자	1대
	차) 간이증류기	1회 2점 이상 증류 1대
	카) 주정계	0.2도 눈금 0 ~ 100도 1조
	타) 비중계	0.7 ~ 1.85 SG 1대
2) 저장조	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	
3) 탱크로리	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	

다.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: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)

4. 주류수출입업

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.

다만, 주류(주정은 제외한다)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, 주정(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)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.

창고면적	22㎡ 이상
그 밖의 사항	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: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)

5. 주류중개업

가.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

나.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

1)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

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)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
나)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(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·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)

3)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
4)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
5)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
6. 주류소매업

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.

가.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

나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

7. 주정소매업

가.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

나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